

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. 10. 24 선고 2024가단114757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변론 종결2024. 9. 12.

판결 선고2024. 10. 24.

주 문

-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23. 12. 6.부터 2024. 6. 29.까지는 연 5%, 피고 C은 2023. 12. 6.부터 2024. 5. 22.까지는 연 5%, 각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-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가. 피고 C에 대한 청구 : 자백간주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)

나. 피고 B에 대한 청구 : 공시송달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여현주

별지